

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-418호

캐롯(주)의 보험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「보험업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 「보험업법」 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2일
금융위원회

- 다 음 -

1) 상 호	캐롯(주)
2) 보험종목	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 전부* (보증보험, 재보험 제외) * 제3보험업(상해, 질병, 간병보험) 허가를 의제 (보험업법 제4조제3항)
3) 자본금	850억원 (보통주 687억원, 우선주 163억원)
4) 허가일	2019. 10. 2.
5) 허가조건	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, 우편,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것